

재외 피폭자의 미지불 수당 지급에 대한 Q&A

Q1. 재외 피폭자에 대한 미지불 수당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A1. 일본에서 수당을 지급하던 도도부현,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키시에서 지급합니다.

Q2. 미지불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A2. 과거에 수당 지급 인정을 받았는데 일본을 출국함으로써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1997년 11월 이전의 지급인정기간 중 일본을 출국함으로써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Q3. 예를 들어 1992년 4월에 일본에 가서 1992년 5월부터 1995년 4월까지의 3년 동안 건강관리수당 지급 인정을 받았지만, 일본을 출국함으로써 1992년 9월부터 지급이 정지되었고 그 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불 수당은 지급되는 건가요?

A3. 이와 같은 경우, 지급이 정지된 1992년 9월분부터 지급인정기간의 종료월인 1995년 4월분까지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Q4. 미지불 수당이 있는 경우,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A4. 수당 지급 인정을 받은 도도부현,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키시의 원폭 피폭자 담당과(별지)로 연락하십시오.

Q5. 과거에 두 차례 일본에 가서 각각 다른 도도부현에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A5.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당을 지급받던 각각의 도도부현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또 미지불 기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정을 받은 도도부현에서 지급됩니다.

Q6. 미지불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6. 미지불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본인 확인(구체적으로는 피폭자건강수첩 사본, 신분증명서, 거주증명서, 주민표 등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과 ②수당을 입금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당 지급 인정을 받은 도도부현,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키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미지불 수당을 확인하기 위해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7. 미지불 수당이 있는 분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7. 미지불 수당이 있는 분이 이미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분이 사망한 달까지의 미지불 수당을 그 분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인에게 미지불 수당을 지급할 때는 사망한 분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분과 상속인과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